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2.

전라남도지사



1. 적용기간

- **방역조치 강화**(사적모임 등) : 2021. 12. 23.(목) 0시 ~ 2022. 1. 2.(일) 24시
 -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확대 적용** : 20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 *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제도기간 부여(~ 12. 12.)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11세 이하인 자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①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확대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실내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②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 '22.1.3.(월) 시행예정(계도기간 1주, 1.3.~9.)

③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후
2022년 2월 1일(화) 시행

4.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① 사적 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을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50명~2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모임·행사 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 취식)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6m²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 행사 외 불승인 등)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불가피하게 행사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만 행사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또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등에 예외적 허용하되, 개별식사를 원칙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단체식사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행사 시작 전·종료 후 취식은 사적모임으로 간주

- 가. (1명~4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 나. (50명~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 다.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의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 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④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운영중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 <3개월 이내> ④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p>▶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p> <p>※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p>※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p>*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p>	<p>◦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p>
<p>▶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p> <p>※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p>▶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p>▶ 기타(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p>*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p>	
<p>※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p>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서 1부. 끝.

행정명령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21. 12. 23.(목) 0시 ~ `22. 1. 2.(일) 24시)

-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21. 12. 6.(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22. 2. 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현 행) 18세 이하 → (조 정)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전라남도지사



불임1**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2. 22. ~ 별도 공지일까지]****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2월 1일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전국 공통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 기존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 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 규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상점·마트·백화점(각 300m² 이상) ▲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사업장(2종)

- ▲ 콜센터 ▲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22. 2. 1. 부터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고위험시설 별도 적용)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4명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 인정 <p>*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p>*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p> <p>*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p>

구분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은 동일 적용</p>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카지노는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p> <p>*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p> <p>*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p>
식당·카페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까지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학원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 · 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 (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구분	방역수칙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p>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 · 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p>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 · 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p>*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p> <p>▶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p>

구분	방역수칙
국제회의·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p>
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이용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p>*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p>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p>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p>*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p> <p>*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 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를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7시	09시~16시	09시~16시	담양사랑병원	08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곡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곡성사랑병원	09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참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종류 및 이용가능 범위

연번	시설명	기간		이용가능 범위(22.2.1.부터 12세 이하)				
		21.11.1.~12.5.	21.12.6.~미정	완료	완치	PCR	18(12)≤	의학적
1	유흥시설 등	○	○	○	○	×	×	×
2	노래(코인)연습장	○	○	○	○	○	○	○
3	실내체육시설	○	○	○	○	○	○	○
4	목욕장업	○	○	○	○	○	○	○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	○	○	×	×
6	식당·카페	-	○	○	○	○	○	○
7	학원 등	-	○	○	○	○	○	○
8	영화관·공연장	-	○	○	○	○	○	○
9	독서실·스터디카페	-	○	○	○	○	○	○
10	멀티방	-	○	○	○	○	○	○
11	PC방	-	○	○	○	○	○	○
12	스포츠관람장(실내)	-	○	○	○	○	○	○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	○	○	○
14	파티룸	-	○	○	○	○	○	○
15	도서관	-	○	○	○	○	○	○
16	마사지업소·안마소	-	○	○	○	○	○	○
17	결혼식장	-	-	-	-	-	-	-
18	장례식장	-	-	-	-	-	-	-
19	유원시설	-	-	-	-	-	-	-
20	오락실	-	-	-	-	-	-	-
21	상점마트·백화점	-	-	-	-	-	-	-
22	스포츠관람장(실외)	-	-	-	-	-	-	-
23	실외체육시설	-	-	-	-	-	-	-
24	숙박시설	-	-	-	-	-	-	-
25	키즈카페	-	-	-	-	-	-	-
26	돌잔치	-	-	-	-	-	-	-
27	전시회·박람회	-	-	-	-	-	-	-
28	이미용업	-	-	-	-	-	-	-
29	국제회의·학술행사	-	-	-	-	-	-	-
30	방문판매 등	-	-	-	-	-	-	-

참고

다중이용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비고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포함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	-
2그룹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포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일반 예능기예 교습소 기숙형 포함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농안시설 회장장 포함
	이미용업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포함
	오락실·멀티방	
	대규모점포 등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포함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포함
	PC방	
	그 외 상점	편의점 포함
기타	스포츠경기(관람)장	
	종교시설	
	경륜·경마·경정장	
	박물관 등	미술관, 고궁 등 포함
	실외체육시설	스키장 포함
	숙박시설	
	도서관	
	키즈카페	
	안마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돌잔치 전문점	